
4단계 BK21 사업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 내부 규정

1.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 지침
2. 참여교수 선발 지침
3.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지침
4. 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5. 단기 해외연수 지원 지침
6. 장기 해외연수 지원 지침
7. 국내여비 지원 지침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이하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대학원생의 선정 및 참여 대학원생 간의 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연구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구장학생 선발 및 평가 항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정 시행 훈령)

- ① 본 규정 시행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의거한다.

제3조 (참여대학원생)

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입학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및 석사 수료생
2. 입학한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및 박사 수료생
3. 입학한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통합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②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④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⑤ 대학원생의 참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및 지급액)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

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

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

제6조 (선정 및 평가절차)

①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장학생 선정은 지도교수의 추천 및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규정을 바탕으로 교육연구단 대학원생으로서 소양이 우수한 학생을 최종 선정한다.

제8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사항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단계 BK21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 ☐ 교육연구단(팀)명 : (교육연구단(팀)장 :)
- ☐ 참여자 성명 : (생년월일 :)
- ☐ 참여구분 : 참여교수 / 신진연구인력 / 산학협력 전담인력 / 참여대학원생

상기 본인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훈령과 규정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훈령 및 지침 상 명시되어 있는 참여 자격 기준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을 확인합니다.
2.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연구단(팀)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비롯한 사업비와 관련한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충실히 준수하고 집행하겠습니다.
3.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인건비와 관련한 아래의 유의사항을 항상 준수하며,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 및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각 개인의 통장·도장 일괄 관리 및 일정 금액을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
- ✓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등 부당한 지시·요구 확인 시 관련 기관에 즉시 알림

년 월 일

성명 (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귀하

참여대학원생 포기원

본인은 4단계 BK21 선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되었으나 다음의 사유로 포기하고자 합니다.

참여대학원생 포기 사유 :

20 년 일 일

서약인 : (인 또는 서명)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장 귀하

타 연구과제 참여 승인 신청서

소 속	충남대학교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성 명	
학위과정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박통합과정
과 제 명	
지원기관	
참여기간	
내 용	예) oooooo에서 지원하는 위 과제에 대하여 (무급, 유급) 연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지도교수
(서명)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장 귀하

4단계 BK21사업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지원 신청서(상/하반기)

대학원생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번							
	과정 및 학기	()과정 () 학기						
	학과							
	주소							
	계좌정보 (본인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원 요청	월별 지급 요청 사항 (O / X 로 표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지급자격기준 (O / X 로 표기)	석사과정생(1~4학기) 석박사통합과정생(1~4학기)			박사과정생(1~8학기) 석박사통합과정생(5~12학기)			

위 사람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소속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본 지도교수의 대학원생 중 4단계 BK21사업 지원대학원생으로 추천하오니 상기 지원 요청 사항에 따라 연구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일 일

학 생 (인)

지도교수 (인)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장 귀하

4단계 BK21 연구장학금 수혜 종료 신청서

4단계 BK21 연구장학금 수혜를 다음과 같이 종료합니다.

* 수혜종료대상자

이름	과정	사유	일시

20 년 월 일

교수 (인)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장 귀하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선발 지침

제1조 (목적) 전주기적 스마트 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참여교수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여교수 제외 대상)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는 교수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있다.

1.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다만,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인 교수는 본문의 단서에 따른다.)
2.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제28조에 따른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

제3조 (참여교수 교체 및 추가)

① 교육연구단의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시 공고한 사업 참여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4조 (참여교수의 선발기준)

① 참여교수는 교육연구단이 소속된 학과에 전임발령이 되어있어야 하며, 참여교수의 소속이 학부와 대학원 동일소속임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이 다를 경우 대학원 전임발령을 내야 한다. 다만,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경우 타 학과 소속 전임 교원도 참여가 가능하나 겸임 발령이 필요하며, 그 밖의 참여교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 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사항은 교육연구단 운영규정 및 교육인적자원부 4단계 BK21 시행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에 소속된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지급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성과급은 중복수여가 불가하다.
- ②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전체 참여교수의 당해연도 연구, 교육, 산학협력 및 교육연구단에 대한 기여실적을 평가한다.
- ③ 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은 불가하다.
- ④ 책정된 교육연구단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교수의 교육연구단 기여도를 평가하여 1인당 연 480만원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 ⑤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아래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기준을 따른다.
- ⑥ 평가 점수가 동점자가 나올 경우 모두 지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지급기준)** 성과급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기준표>

평가항목	세부사항(배점)	실적 기간
참여교수 실적 (30점)	참여 교수의 연구 실적 (30점) : SCI 논문 수	최근 1년
참여대학원생 실적 (30점)	지도 학생 장학금 지급 인원 수 (30점)	최근 1년
산학 협력 실적 (80점)	특허 출원 실적 (10점)	최근 1년
	기술 이전 실적 (30점) : 상(30점)/중(20점)/하(0점)	최근 1년
	사업화 실적 (20점)	최근 1년
	창업 실적 (20점)	최근 1년
기여도 평가 (60점)	교육연구단 기여도	
총점	200점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진연구인력 자격)

- ① 대학의 장은 교육연구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박사후과정생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교수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교수에게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연구단 운영규정 및 교육인적자원부 4단계 BK21 시행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

단기 해외연수 지원 지침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의 국제화에 도움을 주고자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및 자격)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비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참여대학원생

나.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혹은 계약교수)

다.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논문 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의 경우에는 총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항목)

- ① 등록비, 항공료, 숙박비, 일비 등 제반 참가 경비 지원
- ② (지원한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한 여비 금액과 교육연구단의 지원 한도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단, 여비 산정에서 체재 일수는 학회 기간과 이동 일자를 포함한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지 역	지원 한도 금액
극동 및 동남아시아, 기타 아시아(일본)	150만원 이내
미주, 구주, 호주	300만원 이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	실비정산

- ③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 타 기관 지원액과 교육연구단 지원 한도액의 합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한 여비 금액과 등록비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분을 제하고 지급한다.

제5조 (지원 제한)

- ① 하나의 논문에 대해서 지원받는 학생의 수는 2명으로 한정한다.
- ② 국제학회충족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증빙은 추후 제출이 가능하다.

제6조 (신청절차) 신청은 소정의 교육연구단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출국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교육연구단 사무실에 접수하여야 하며, 교육연구단의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출장신청서
- ② 항공권 예약 페이지
- ③ 학회 관련 자료 1부 : 학회 일정 또는 학회 등록 영수증
- ④ 국제학회충족확인서
- ⑤ 공무국외여행 승인 공문 사본(교수 참가 시)

제7조 (결과보고) 경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귀국 후 20일 이내에 교육연구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① 결과보고서
- ②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 확인서
- ③ 보딩패스 원본
- ④ 학회 참석 증빙자료 1부
- ⑤ 학회지 표지 및 발표논문

제8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연구단장이 본 지원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연구단 운영규정 및 교육인적자원부 4단계 BK21 시행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제학술대회 기준 충족 확인서

학회명	
학회주관기관	
학회장소	
학회기간	
참가 국가 수	
발표 건 수	
외국인 논문 수	
외국논문 비율	
학회 Web address	

국제학술대회 기준 (모두 충족)

1. 4개국 이상 참여
2.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10건 이상)
3.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인 논문비율 50% 이상
(단, 국내 개최 시 3분의 1 이상)

년 월 일

작성자(학생) : (인)
 확인자(지도교수) : (인)
 확인자(교육연구단장) :

(인)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장기 해외연수 지원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국제화와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고자 장기해외연수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간 및 연수의미) 대학원생이 해외대학 저명교수의 지도나 해외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15일 이상의 연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①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게는 해당 연수기간동안 연구 장학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4조 (지원항목) 체제비 집행기준 및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① 항공료(실비기준)와 체제비(공무원여비 기준)를 지원하고, 항공료(실비기준)는 체제비와 별도로 지원한다.

② (지원한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한 여비 금액과 교육연구단의 지원 한도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단, 여비 산정에서 체재 일수는 학회 기간과 이동 일자를 포함한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지 역	지원 한도 금액
극동 및 동남아시아, 기타 아시아(일본)	300만원 이내
미주, 구주, 호주	600만원 이내

③ 타 지원기관(한국연구재단, 본교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타 지원기관 지원액을 공제한 차액 중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5조 (신청시기 및 경비 지급)

① 신청 시기 : 국제협력활동 참가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② 해당 신청서류

- 장기 해외연수 참가경비 지원신청서 및 연수계획서 1부
- 해외기관 초청서 1부
- 연수일정표 1부(일정 및 연수자 일정 명시)
- 항공권 INVOICE 1부

③ 경비 지급 : 해당 대학원생 계좌입금

제6조 (결과보고) 경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귀국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단 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① 제출서류

- 장기연수 참가 결과보고서 1부
- 항공권 사본 1부
- 여권 사본 1부
- 보딩패스 원본 1부

제8조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충남대학교교육공무원
국외여행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장·단기해외연수의 정의는 교육부에서 정한 4단계 BK21
플러스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기 해외연수 참가경비 지원신청서

* 아래의 각 항목별로 별지에 작성

1. 연수의 필요성
2. 연수의 내용, 범위, 방법
3. 연수기관의 우수성, 연수과제와의 적정성
4. 연수자의 연수수행능력
5. 연수목표가 기대효과, 활용방안
6. 연수과제의 국내외 연구동향
7. 연수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

해외석학 초빙 지원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들과 신진인력 및 참여교수가 국제적인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해외석학 초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에 한한다.

제3조 (지원범위)

- ① 여비 및 체제비 : 본교 자체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
- ② 감사료(자문료): 본교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제4조 (신청절차) 신청은 소정의 교육연구단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일주일 전까지 교육연구단의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연구단의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해외전문가 이력서
 - ② 해외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서
 - ③ 초청증빙서류 (세미나 일정표 등)
 - * 세미나 일정표에 BK교육연구단 주관 내용이 포함
 - ④ 항공권 예약 인보이스 (선결제 시 항공권 사본 포함)
- 단, 부족한 서류는 추후제출(결과보고 시)이 가능하다.

제5조 (결과보고) 해외석학 초빙 후 7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① 결과 보고서 (여비 및 체제비 지급시에만 작성)
- ② 입체불 청구서
- ③ 초청강연회 참석명단
- ④ 여권사본
- ⑤ 초청강연 사진

제6조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충남대학교교육공무원 국외여행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해외석학 초빙 지원은 교육부에서 정한 4단계 BK21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외전문가 초청 경비 신청서

전문가 인적사항	이 름	소 속 / 국 가	직 급	E-Mail
초 청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일간)			
초 청 목 적				
신청내역	왕복항공료	체재비	계	
타 기관 지원내역	지원기관명	지원내역	지원금액	
위와 같이 해외석학 초청경비를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 첨부서류 : 신청시 제출 1. 피초청자 Curriculum Vitae 2. 활용 계획서 3. 초청 증빙 서류 (예를 들어 세미나 일정표, 논문심사 계획서 등) ※ 결과보고서 제출서류 (피초청자 귀국 후 7일 이내 제출) 1. 결과보고서 2. 여권사본 (사진이 있는 면과 출입국 일자가 기재된 면) 3. 항공권 사본				
사업단 지원내역	승 인 일 자		지 급 액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장 (인)				

해외석학 초빙 활용 계획(안)

전문가 인적사항	이 름	소 속 / 국 가	직 급	E-Mail
초 청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일간)			
초 청 목 적				
신청내역	왕복항공료	체재비	계	

일 정	
날짜	계획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

국내여비 지원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참여인력들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학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내 여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항목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지침의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인력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내학술회의에 참가 할 경우 경비 지원으로 인정되는 국내학술회의(실적 인정 기준 만족하는 학술대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자격)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비에 대한 지원대상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참여대학원생
- ②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혹은 계약교수)
- ③ 학회 논문 발표자
- ④ 각 연구실 당 4명까지 지원
- ⑤ 행정전담인력

제4조 (지원내용) 공무원 여비규정 및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와 여비를 지원한다.

제5조(지원제한) 타 연구비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제6조 (신청절차) 신청은 소정의 교육연구단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학회참가 7일 전까지 교육연구단 사무실에 접수하여야 하며, 교육연구단의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단, 학회참가가 미리 계획되지 않았거나 기한 내에 신청서 제출이 안 될 경우 여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제7조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충남대학교교육공무원 국외여행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국내여비 지원은 교육부에서 정한 4단계 BK21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단계 BK21 국 내 출 장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직 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박 일)		
	학회명 (방문기관)			
	학회기간 (방문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박 일)		
	출 발 지			
	경 유 지			
	도 착 지			

위와 같이 출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지도교수 : _____ (서명 또는 인)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장 귀하

4단계 BK21 국 내 여 비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직명		지도교수	
	출장목적					
	출장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박 일)				
	학회명 (방문기관)					
	학회기간 (방문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박 일)				
	출 발 지					
	경 유 지					
	도 착 지					
여비 내역	교 통 비					
	일 비	일 × 원 =				
	숙 박 비	일 × 원 =				
	식 비	일 × 원 =				
	합 계					

입금계좌 :

은행:

예금주:

위와 같이 여비를 신청하오니 교육연구단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서류 : 행사프로그램 사본 1부
- 학회발표 논문 초록 1부
- 학회등록증(등록확인 증빙서류) 사본 1부
- * 학회참석 후 7일 이내 여비정산서 제출

20 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지도교수 : _____ (서명 또는 인)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장 귀하